

# 예 산 총 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5,280,338	9,158,410
일반회계	295,000,000	8,850,000
특별회계	10,280,338	308,410
기타특별회계	10,280,338	308,41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44,206	64,326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00	27
의료급여특별회계	1,037,659	31,130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895,015	26,850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0	600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704,800	21,144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1,287,658	38,630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89,169	2,675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484,565	74,537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1,616,366	48,49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02,21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